

# 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4-35호

##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4년 4월 8일

### 방송통신사무소장

1. 공고사유: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2. 공고기간: 2024. 4. 8. ~ 2024. 4. 21.
3. 공시송달 대상

| 구분 | 대상자 | 생년월일/<br>법인등록번호 | 과태료 고지번호            | 과태료        | 체납자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남이균 | 1969.00.14.     | 0178200274100002964 | 1,146,000  | 광주광역시 북구<br>삼정로 00            |
| 2  | 백정희 | 1958.00.02.     | 0178200274100005966 | 885,000    | 전라남도 나주시<br>금성관길 00-0         |
| 3  | 박명수 | 1976.00.26.     | 0178200274100008296 | 31,860,000 | 전라남도 화순군<br>석치길 00-0          |
| 4  | 김수진 | 1969.00.24      | 0178230274100001656 | 26,028,000 |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<br>완산구 황강서원 0길 00 |
| 5  | 장경기 | 1980.00.03.     | 0178200274100007534 | 31,860,000 |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<br>조촌안 0길 00-00   |
| 6  | 최희선 | 1970.00.17.     | 0178200274100007559 | 31,860,000 |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<br>무왕로 00길 00     |
| 7  | 조영안 | 1995.00.17.     | 0178240274100000145 | 3,862,500  | 광주광역시 서구<br>치평로 000           |
| 8  | 조규묵 | 1971.00.01.     | 0178200274100007515 | 5,310,000  |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<br>황등로 000-0      |
| 9  | 오만수 | 1960.00.01.     | 0178200274100006020 | 3,500,000  | 광주광역시 서구<br>화운로 00            |

4. 문의: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(광주 서구 회재로905 시청자미디어센터4층 ☎ 062-457-1595, 1596)
5. 공고내용: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6. 납부방법: 인터넷지로(giro.or.kr) 또는 NTR POPCON(ntrpopcon.go.kr), 모바일앱(NTR POPCON)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(수납기관 :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)
7.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
  - 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증가산금(重加算金)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  - 나.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달할

때까지 부과됩니다.

- 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- 라. 또한,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,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